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2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4
1. 제정안의 입법배경	4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6
3. 총괄 검토의견	11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4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6
1. 목적 및 정의규정	16
2.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9
3. 진상규명 신청, 각하결정 및 조사개시결정	23
4. 조사방법, 유해 조사·발굴 및 활동기간	26
5. 진상규명결정 및 피해자 직권 결정 등	32
6. 피해보상 및 지원	36
7. 보상금등의 지급절차·권리보호 등	39
8. 비밀준수 의무 및 벌칙	43

I. 개요

1.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42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10.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영화숙·재생원에 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25년 2월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서 밝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3)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과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1조).
- 4)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출석, 청문회, 동행명령, 유해의 조사 및 발굴 등의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5) 위원회는 조사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되, 1년의 범위에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치유를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또는 추모행사,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부산지역에서 운영된 부랑인(아) 집단수용시설로서, 부산시는 재단법인 영화숙과 ‘부랑인·노숙자 수용 보호 위탁’을 체결하여 18세 미만 부랑아는 영화숙에, 18세 이상 부랑인은 재생원에 수용하도록 하였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를 의결하였고, 2025년 2월 25일 신청인 10명과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 등 총 181명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진실규명 대상자들은 경찰 및 단속 권한이 없는 영화숙·재생원 단속반의 불법·과잉 단속으로 강제수용된 후, 강제노역, 구타·가혹행위·성폭력, 부실한 급식, 과밀수용과 난방 미지원 등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국가와 부산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부랑인의 수용·보호를 영화숙·재생원에 위탁하였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과잉 단속, 자의적 구금 및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고,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 치유·관리계획 수립, 암매장 추정 지

역의 유해발굴 및 시설수용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배상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피해치유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및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총 7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이 법의 목적을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두고(안 제1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
- 제2장(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보상 및 명예회복 업무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와 사무처의 설치(안 제5조), 위촉위원의 결격사유(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피해자·유족·친족관계인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족 결정 신청과 그 기간을 정하고(안 제8조 및 제9조), 신청의 각하결정 및 직권을 포함한 조사개시결정(안 제10조 및 제11조), 조사방법(안 제12조), 청문회(안 제13조), 동행명령(안 제14조), 유해의 조사·발굴 및 유전자검사(안 제15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그 연장(안 제16조),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안 제17조), 결정통지와 이의제기(안 제18조 및 제19조), 결과보고서 작성(안 제20조), 피해자 직권결정(안 제21조), 유해 조사·발굴 등에 따른 손실보상

(안 제22조)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조치)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유족의 상속 특례를 규정하고(안 제23조), 부상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안 제24조),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안 제25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절차(안 제26조), 지급 여부 및 금액의 심의·결정(안 제27조), 결정서 송달 및 보상금등의 지급청구(안 제28조), 재심의(안 제29조), 보상금등 수급권의 보호(안 제30조), 조세면제(안 제31조),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및 재판상 화해(안 제32조), 환수(안 제33조), 시효(안 제3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안 제35조)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피해자 및 유족 치유 등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트라우마 치유, 기념·추모행사 및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등 피해치유사업을 규정하고(안 제36조),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안 제37조).

□ 제6장(보칙)은 위원회의 위원·직원·감정인·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8조),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안 제3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안 제40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7장(벌칙)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안 제41조),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거짓 답변, 실지조사 거부·방해, 동행명령 불응 및 불이익 처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2조).

< 제정안의 조문 구성 >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2장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4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8조	진상규명의 신청
	제9조	신청의 방식
	제10조	신청의 각하결정
	제11조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제12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13조	청문회
	제14조	동행명령
	제15조	유해의 조사·발굴 등
	제16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7조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제18조	결정통지
	제19조	이의제기
	제20조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제21조	피해자 직권 결정
	제22조	손실보상
제4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23조	보상금
	제24조	의료지원금
	제25조	생활지원금
	제26조	지급 신청
	제27조	심의와 결정
	제28조	결정서 송달 및 보상금등의 지급
	제29조	재심의
	제30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31조	조세면제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3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34조	시효
	제3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장 피해자 및 유족 치유 등 지원	제36조	피해 치유사업
	제37조	불이익 처우 등 금지
제6장 보칙	제38조	비밀준수 의무 등
	제39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과태료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기초한 피해자·유족의 보상 및 지원, 피해자의 치유와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음.
- 우선, 제정안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영화숙 및 재생원에 부랑인 등으로 수용된 사람들이 강제수용·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성폭력·교육권 침해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사건을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유족 등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 청취, 실지조사, 청문회 및 동행명령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유해의 조사·발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 규명결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제정안은 국가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보상금등의 지급을 위한 신청·심의·결정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및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념관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 마지막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발언한 사람 및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피해자·유족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원회 관계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영화숙·재생원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 피해 치유사업 및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181명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료지원, 장기적 피해 치유대책 마련 및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그 자체로 보상금 지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또는 유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생활지원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특례를 두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지원 및 보상 절차와 별도로 제정안이 독자적인 진상규명기구와 조사절차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 절차와 대상 및 기능 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별도의 위원회가 동일·유사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경우 조사 범위와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 경우 진실규명 또는 피해자 결정의 효력, 보상 대상의 확정 및 지원절차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독자적인 진상규명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전제로 별도의 보상·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사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지원입법의 방식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집단수용시설 등 과거사 사건 관련 법률안 7건 중 3건은 덕성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특정 개별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인 반면, 나머지 4건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포괄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임.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사 제정법률안 >

구분	의안번호	제명	발의자
집단수용 시설 등 일괄	1400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17719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17984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20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개별사건	690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44인
	6944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 · 용혜인 · 이성권의원 등 23인
	11420	영화숙 · 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개별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은 유사한 성격의 시설 인권 침해 피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피해 인정, 보상금등의 산정, 신청 · 심의 · 결정 및 불복절차 등이 사건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경우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영화숙 · 재생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차와의 관계를 정비하는 한편, 유사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포괄하여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통합적 입법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과거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인권침해 사건이 타 유사 시설에서도 발생한 점, 동일인의 다 시설 수용 사례(소위 ‘회전문 입소’), 3기 진화위의 추가 진실규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집단수용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정이 바람직함.

또한, 진상규명 관련 조항은 「과거사정리법」 개정('26.2.26. 시행)에 따라 3기 진화위가 출범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진실규명 업무는 일관성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진화위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동 법률안은 그간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

진상규명 관련 규정은 향후 진화위 활동 상황(활동기간 3년, 2년 연장 가능),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9조 및 제71조에서 이미 금지(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음.

제정안의 벌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해 현저히

낮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38조의 비밀준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제39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규정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사건·피해자 및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안 제2조).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위원회 업무 수행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위원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시(부산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재단법인 영화숙과 영화숙이 운영하였던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4조에 따른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피해자를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용, 강제노역, 폭행 및 교육 기회의 박탈 등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장기간의 후유장애를 현재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 가족과 단절되어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사람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록이나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후유장애 여부를 피해자 인정의 필수요건으로 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2항은 위원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 또는 공동수행의 대상·절차·책임주체에 관한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진상규명 및 피해자 결정은 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할 핵심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자료의 수집·정리, 유해 발굴을 위한 기술적 조사 등 보조적·전문적 업무에 한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대상 업무와 수탁기관의 요건 등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및 경찰청장 등 당연직위원과 피해자·유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또한,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제2장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4조(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
2.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
4. 제15조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5.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6.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7. 제21조에 따른 피해자 직권 결정
8.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5조에 따른 생활지

제2장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원금의 심의·결정 및 지급

9. 제3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피해자 및 유족 대표, 진상규명·인권·복지 등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처를 둔다.

⑨ 그 밖에 위원회·소위원회 및 사무처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위촉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장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혹은 진상규명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영화숙·재생원 사건 진상규명에는 당시 부산광역시의 수용보호 위탁, 경찰 등에 의한 단속 및 수용 과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안 제5조는 부산광역시장과 경찰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어,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과 후속조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조사대상 또는 국가책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진상규명결정, 피해자·유족 결정 및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까지 수행하게 되므로, 사실인정과 보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부산광역시장과 경찰청장의 위원회 참여 필요성 및 의결권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5조는 위촉위원으로 피해자·유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이나 추천 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음.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특성상 피해 경험과 기록의 단절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유해 발굴·의료·법률·과거사 조사 등 전문적 판단도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의 구성 기준과 피해자·유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진상규명 신청, 각하결정 및 조사개시결정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피해자·유족·친족관계인 또는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족 결정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청기간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또한, 신청의 각하 사유와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조사개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8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 및 피해자 또는 유족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의 방식)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문서 등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② 그 밖의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1조(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피해자·유족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족 결정에 관한 조사를 새로이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해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피해자 181명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회복지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별도의 신

청·조사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 절차와 대상 및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며,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 범위나 피해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의 필요성과 별도로 제정안에 따른 독자적인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개시 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조사방법, 유해 조사·발굴 및 활동기간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보존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 또한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4조), 사건 관련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5조).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국회에 미리 보고한 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2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 조사
-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③ 위원회가 제1항제6호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관계기관등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등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제출·통보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의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신문할 요지(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한정한다)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 등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지. 단,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주거지 기재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

3. 동행할 장소 및 발부연월일

4.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5. 동행명령장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그 밖에 동행명령장의 집행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물」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 확인을 위하여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2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 진상규명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2조는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보전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감정·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장기간 경과한 시설수용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수용기록, 경찰기록, 의료기록, 시설 운영자료 및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여 피해자 18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재차 청취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12조는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바, 이는 상당히 엄격한 경우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는 국가기밀 등 특정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¹⁾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 안 제14조는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사건과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를 가진 사람이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자발적인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인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다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은 동행명령의 대상을 진실규명에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²⁾. 이에 비하여 제정안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 또는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동행명령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동행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으므로 그 발부요건은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14조의 대상을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9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5. 진상규명결정 및 피해자 직권 결정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조사 결과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결정을,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도록 하고, 각하결정·조사개시결정·진상규명결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또한,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20조),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를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1조), 유해의 조사·발굴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7조(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에는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결정통지)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8조제1항의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대상자에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그 밖에 통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이의제기) ① 제1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

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이의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의 이의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동의를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동이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8조는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³⁾.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결정이 특정 개인의 위법행위나 기관의 책임을 직접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명예·방어권과 관련될 수 있고, 이들이 이의신청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음. 반면, 장기간이 지난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특성상 조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결정의 통지가 오히려 피해자·유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통지 대상을 현행 과거사정리법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통지 대상과 범위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제한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0조는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결과보고서 또는 개별 진상규명결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진상규명 결과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사건의 역사적 기록화와 재발방지·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만으로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1조는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를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사전 통지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공적 조사에서 확인된 사람을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령·질병·가족 단절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만, 안 제21조제1항제2호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문번호를 제26조로 인용하고 있으나, 2026년 2월 26일 시행된 같은 법 전부개정으로 제26조는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진실규명결정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체계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피해보상 및 지원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상속 및 사실상의 배우자·유족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3조). 또한, 계속 치료·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안 제24조), 질병·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5조).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23조(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⑤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료지원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

건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중에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료지원금의 지급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생활지원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은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23조는 피해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후유장애 등 개별 피해의 양태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망·행방불명, 상이 등 피해유형별로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사망·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의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기준과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⁵⁾.

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안 제23조는 산정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보상금의 기본적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피해의 유형·정도, 사망·행방불명·상이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등 보상금 산정의 핵심 요소는 법률에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4조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중 계속 치료·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피해자는 신체상 상이뿐 아니라 장기간의 강제수용·폭행·성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정신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의 대상이 신체적 부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장애등급·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효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7. 보상금등의 지급절차·권리보호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와 위원회의 심의·결정,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또한 보상금등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고, 조세를 면제하며, 다른 법률 등에 따른 급부와의 관계,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및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아울러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안 제35조).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26조(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서 송달 및 보상금등의 지급)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심의) ①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30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1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안 제31조는 보상금등에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금등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상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두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⁶⁾,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2조제3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해당 사건으로 입은 모든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되, 정신적 피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시설수용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남겨 두려는 것으로 보임.

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정안과 같이 정신적 피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⁷⁾.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⁸⁾,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는 손해의 범위,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비밀준수 의무 및 벌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유족의 심신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조), 피해자·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안 제37조). 또한 위원회 관계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두고(안 제38조 및 제39조), 위원회 관계자에게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40조),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조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제5장 피해자 및 유족 치유 등 지원
제36조(피해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트라우마 치유 사업 2. 기념 또는 추모행사 3.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 치유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불이익 처우 등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8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

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별칙

제41조(별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 또는 정보 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안 제37조는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과거 시설수용 사실이나 피해경험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낙인, 차별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권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안 제37조의 불이익금지 규정은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우의 유형과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